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18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주철현 · 황운하 · 김 현
김성범 · 송옥주 · 정준호
임문영 · 문대림 · 염태영
진성준 · 어기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농기계은행사업은 농업협동조합이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유 부담을 경감하고 조합원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임대하거나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고가의 농기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그 부담이 농기계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농업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업기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u>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② (생 략)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u>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이 조합원의 농업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u> ② (현행과 같음)